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6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임의자 · 강승규 · 신성범
김 건 · 이소희 · 조지연
이인선 · 박덕흠 · 백종현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을 “성별·학력·장애·연령·출신국가·사회적 신분”으로 한다.

제4장 제1절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규모,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그 준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를 지정할 것
2.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u>성별 · 학력 · 장애 · 사회적 신분</u>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5조(차별금지) ----- ----- ----- ----- <u>성</u> <u>별 · 학력 · 장애 · 연령 · 출신국</u> <u>가 · 사회적 신분</u> ----- ----- -----. 제16조의3(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① <u>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u>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②
(생략)
<신설>

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규모,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그 준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를 지정할 것

2.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
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
하여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
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을 마련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취약계층에 대
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

터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